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3. 31.
제 출 자: 달성군의회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 이유

- 가.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
결과,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,
- 나.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
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(안 제7조제1항 중 별표1)
 - 기본요금(750 l 까지): 13,380원 ⇒ 13,530원(1차년도: 13,450원)
 - 초과요금(100 l 마다): 1,250원 ⇒ 1,490원(1차년도: 1,370원)
- 나.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대행 교부금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9조)
 - 「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」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
삭제하고자 함.
- 다. 과태료 부과·징수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2조)
 -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
 - 「질서행위위반규제법」 등에 과태료 부과·징수의 절차가 명시
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, 「행정절차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2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4) 물가대책심의: 원안동의

5) 입법예고: 2019. 1. 30. ~ 2019. 2. 19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
(제7조제1항 관련)

구분		수수료		
		수집·운반	처리	계
2019년 6월 1일부터	기본요금 (0.75㎥까지)	12,700원	750원	13,450원
	초과요금 (매0.1㎥마다)	1,270원	100원	1,370원
2020년 6월 1일부터	기본요금 (0.75㎥까지)	12,780원	750원	13,530원
	초과요금 (매0.1㎥마다)	1,390원	100원	1,490원

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) 수수료를 말함.

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수수료를 말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9조(징수 대행 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)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징수대행 납부한 처리수수료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매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대행 징수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2조(과태료의 징수 등) ① 군수는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한다. ②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 1】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(제7조제1항 관련) <table><tr><th rowspan="2">부과기준</th><th colspan="3">수 수 료</th></tr><tr><th>수집·운반</th><th>처 리</th><th>계</th></tr><tr><td>기본요금 (0.75㎡까지)</td><td>12,630원</td><td>750원</td><td>13,380원</td></tr><tr><td>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</td><td>1,150원</td><td>100원</td><td>1,250원</td></tr></table> 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 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·운반	처 리	계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630원	750원	13,380원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150원	100원	1,250원	【별표 1】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(제7조제1항 관련) <table>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부과기준</th><th colspan="3">수 수 료</th></tr><tr><th>수집·운반</th><th>처리</th><th>계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2019년 6월1일부터</td><td>기본요금 (0.75㎡까지)</td><td>12,700원</td><td>750원</td><td>13,450원</td></tr><tr><td>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</td><td>1,270원</td><td>100원</td><td>1,370원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2020년 6월1일부터</td><td>기본요금 (0.75㎡까지)</td><td>12,780원</td><td>750원</td><td>13,530원</td></tr><tr><td>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</td><td>1,390원</td><td>100원</td><td>1,490원</td></tr></table> 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 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	부과기준		수 수 료			수집·운반	처리	계	2019년 6월1일부터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700원	750원	13,450원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270원	100원	1,370원	2020년 6월1일부터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780원	750원	13,530원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390원	100원	1,490원
부과기준	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	처 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630원	750원	13,3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150원	100원	1,25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기준	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집·운반	처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9년 6월1일부터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700원	750원	13,45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270원	100원	1,37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0년 6월1일부터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780원	750원	13,53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390원	100원	1,49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「하수도법」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0조(이의제기)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

제21조(법원에의 통보)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

2.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「행정절차법」

제25조(처분의 정정)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(誤記), 오산(誤算)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독촉)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□ 「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」

제21조(징수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) ① 시장은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처리수수료 징수를 대행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